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

■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39호)

2025. 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	2
참고자료. 비용추계 결과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홍철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9. 24.
3. 회 부 일 : 2024. 9.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경상남도에는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5개 지원이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김해시는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인 창원에 이어 경상남도 최대 규모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에는 지원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시·군 통합으로 출범한 직후인 1995년 말 김해시 인구는 주민등록 기준 26만 4천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 말에는 53만 4천명 수준이 되어, 동 기간 동안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도시의 성장에 따라 김해시 주민의 사법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창원지방법원을 오가며 시간적·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여야 함. 김해시는 인구 50만명이 넘는 비수도권 도시 가운데 지원급 이상의 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임.

이에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의 김해지원을 설치하는 한편, 창원가정법원이 신설됨을 고려하여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도 설치하려는 것임. (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III. 검토의견

1.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

가. 개정안의 내용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와 같이 규정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 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 개정안은 이 중 [별표 2] 및 [별표 7]을 개정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을 폐지하고,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를 개정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을 설치(창원지방법원 및 창원가정법원 본원 관할구역 조정 포함)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및 개정내용>

개정대상	개정내용
[별표 1] 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 ·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
[별표 2] 시·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폐지
[별표 3]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관할구역 규정 · 창원지방법원 본원 관할구역 조정
[별표 5]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관할구역 규정 · 창원가정법원 본원 관할구역 조정
[별표 7]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폐지

- 개정안에 따라 폐지되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과 신설되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으며, 시행일은 2029년 3월 1일로 규정됨.

<폐지·신설되는 법원의 소재지, 관할구역 및 시행일>

구분	법원명	소재지	관할구역	시행일
폐지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2029년 3월 1일
신설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나. 김해지원 신설에 따른 영향 분석¹⁾

1) 관할인구

- 현재 경상남도 김해시는 창원지방법원 본원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이 설치되면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의 관할구역으로 이관되게 됨. 2023년 12월말 기준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의 관할인구는 53만 3,659명으로, 현재 창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인구(118만 3,485명)의 약 45.1%에 해당함.

<개정안에 따른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의 관할인구>

	법원	관할구역	면적(km ²)	인구(명)		법원	관할구역	면적(km ²)	인구(명)
현재	창원지방법원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김해시	880.667	1,183,485	승격 후	창원지방법원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416.8	649,826 (54.9%)
						김해지원	김해시	463.3	533,659 (45.1%)
	마산지원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1,231.1	444,890					
	통영지원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1,162	404,057					
	밀양지원	밀양시, 창녕군	1,331.5	159,167					
	거창지원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2,511.8	138,195					
	진주지원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2,939.1	566,242					

- 신설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의 관할인구(53만 3,659명)는 전국 지원 중 15위 규모이며, 전국 42개 지원의 평균 관할인구(52만 1,835명)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1) 법원행정처 분석·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지원별 관할인구 비교>

순위	지원	인구	순위	지원	인구
1	성남지원	1,640,985	23	통영지원	404,057
2	고양지원	1,572,660	24	강릉지원	360,715
3	안산지원	1,429,220	25	홍성지원	320,766
4	부천지원	1,266,140	26	충주지원	298,961
5	안양지원	1,045,759	27	안동지원	282,737
6	대구서부지원	1,026,178	28	경주지원	247,489
7	부산서부지원	1,020,844	29	논산지원	218,136
8	천안지원	1,001,755	30	상주지원	217,938
9	부산동부지원	987,880	31	정읍지원	204,557
10	남양주지원	981,660	32	밀양지원	159,167
11	순천지원	825,612	33	제천지원	157,895
12	평택지원	780,056	34	영월지원	150,895
13	진주지원	566,242	35	해남지원	140,195
14	김천지원	543,021	36	거창지원	138,195
15	김해지원	533,659	37	속초지원	137,069
16	군산지원	530,016	38	공주지원	132,272
17	포항지원	502,110	39	남원지원	124,528
18	여주지원	461,748	40	의성지원	97,093
19	마산지원	444,890	41	영덕지원	96,385
20	목포지원	425,440	42	영동지원	93,086
21	원주지원	407,862	43	장흥지원	67,768
22	서산지원	407,097	전국 지원 평균		521,835

2) 예상 사건 수

- 현재 창원지방법원 본원의 연간 접수사건 수를 기준으로 신설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의 사건 수를 추정(신설 김해지원의 관할인구가 현행 창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인구의 45.1%에 해당하므로, 접수사건 수 비율도 45.1%일 것으로 추정)해 보면, 신설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의 연간 접수사건 수는 약 3,807건으로 예상됨.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예상 사건 수 추정>

구 분	민사		형사		합계
	합의	단독	합의	단독	
창원지방법원	398	3,741	360	3,945	8,444
창원지방법원 (분리 후)	219	2,054	198	2,166	4,637
김해지원(안)	179	1,687	162	1,779	3,807

- 신설 김해지원의 연간 접수사건 수(3,807건)는 전국 42개 지원의 평균 접수사건 수(4,036건)보다는 작으나, 16위에 해당하는 수준임.

<지원별 접수사건 수 비교>

순 위	법 원	민사		형사		합계
		합의	단독	합의	단독	
1	성남지원	823	6,945	396	4,489	12,653
2	안산지원	398	4,927	486	5,209	11,020
3	고양지원	553	5,619	411	4,245	10,828
4	부천지원	400	4,853	381	5,163	10,797
5	부산지법동부지원	463	4,259	269	3,366	8,357
6	전안지원	297	3,345	311	4,005	7,958
7	안양지원	393	3,489	266	3,170	7,318
8	부산지법서부지원	222	3,001	295	3,798	7,316
9	평택지원	290	3,108	291	3,579	7,268
10	남양주지원	367	3,737	243	2,846	7,193
11	대구지법서부지원	209	2,819	230	3,911	7,169
12	순천지원	251	2,579	238	2,814	5,882
13	진주지원	177	2,206	159	2,264	4,806
14	군산지원	108	1,672	162	2,331	4,273
15	여주지원	202	2,033	145	1,703	4,083
16	김해지원(예상)	179	1,687	162	1,779	3,807
17	목포지원	106	1,580	189	1,890	3,765
18	원주지원	169	1,378	129	1,954	3,630
19	통영지원	66	1,161	156	2,228	3,611
20	김천지원	91	1,351	128	1,990	3,560
21	서산지원	250	1,403	138	1,700	3,491
22	포항지원	113	1,318	140	1,909	3,480
23	마산지원	87	1,344	93	1,713	3,237
24	충주지원	154	1,170	114	1,307	2,745
25	강릉지원	90	1,228	73	1,258	2,649
26	충성지원	128	1,092	88	1,336	2,644
27	경주지원	115	819	60	958	1,952
28	안동지원	52	726	69	931	1,778
29	논산지원	58	675	65	710	1,508
30	정읍지원	58	708	52	623	1,441
31	밀양지원	64	544	51	746	1,405
32	상주지원	92	621	30	619	1,362
33	해남지원	61	616	42	612	1,331
34	속초지원	65	489	49	651	1,254
35	공주지원	83	476	60	570	1,189
36	영월지원	61	441	40	561	1,103
37	거창지원	56	424	54	512	1,046
38	제천지원	58	431	31	393	913
39	영덕지원	34	329	23	448	834
40	남원지원	23	348	15	398	784
41	의성지원	28	230	31	404	693
42	영동지원	27	279	39	272	617
43	장흥지원	19	199	17	332	567
전국 지원 평균		175	1,809	149	1,903	4,036

3) 사법 접근성

- 김해지원이 현 김해시법원 부지에 설치된다고 전제할 때, 김해지원 설치에 따른 김해시 주민들의 1심 사건에 대한 사법 접근성 변화는 다음과 같음.

생림면과 대동면(김해시 인구의 2.2%) 그리고 김해시 인구가 가장 밀집한 북부동(김해시 인구의 52.1%) 일대의 사법 접근성은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나, 창원시와 인접한 진영읍 및 장유3동(김해시 인구의 45.7%)의 경우 사법 접근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거나 소요시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김해시 각 거점지역에서 관할법원까지 사법접근성 비교>

출발지	도착지	시간		거리 (km)	도착지	시간		거리 (km)
		자동차	대중교통			자동차	대중교통	
생림면 행정복지센터	창원지방법원	43분	1시간 39분	38.4	김해 지원	18분	34분	11.2
대동면 행정복지센터		42분	1시간 53분	31.9		24분	54분	14.8
진영읍 행정복지센터		19분	1시간 16분	17.8		28분	45분	18.2
장유3동 행정복지센터		20분	44분	13.5		24분	55분	12.3
북부동 행정복지센터		36분	1시간 25분	24.3		8분	23분	2.6

4)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미치는 영향

- 김해지원 신설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인구는 전국 법원 중 13위에서 17위로, 사건 수는 전국 법원 중 15위에서 17위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창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인구 및 사건 수 변화>

순위	법원	관할인구
1	수원지방법원	3,446,821
2	인천지방법원	2,997,410
3	서울북부지방법원	2,242,180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73,991
5	서울남부지방법원	1,993,766
6	대구지방법원	1,916,333
7	대전지방법원	1,878,834
8	광주지방법원	1,764,439
9	서울동부지방법원	1,726,248
10	울산지방법원	1,458,783
11	서울서부지방법원	1,349,849
12	부산지방법원	1,284,638
13	창원지방법원(현재)	1,183,485
13	의정부지방법원	1,047,220
14	청주지방법원	1,043,527
15	전주지방법원	895,656
16	제주지방법원	675,252
17	창원지방법원(김해지원 제외시)	649,826
18	춘천지방법원	429,818

순 위	법 원	민사		형사		합계
		합의	단독	합의	단독	
1	서울중앙지방법원	6,638	55,102	1,228	9,773	72,741
2	인천지방법원	971	12,834	1,178	12,597	27,580
3	수원지방법원	1,554	12,422	955	10,408	25,339
4	서울남부지방법원	1,218	12,872	577	7,085	21,752
5	서울서부지방법원	832	14,266	405	4,527	20,030
6	광주지방법원	857	8,278	762	7,183	17,080
7	서울북부지방법원	530	8,153	555	6,829	16,067
8	서울동부지방법원	1,026	9,178	424	5,213	15,841
9	부산지방법원	722	7,436	745	6,724	15,627
10	대구지방법원	780	7,343	690	6,769	15,582
11	대전지방법원	742	7,672	635	6,472	15,521
12	울산지방법원	434	4,223	493	6,343	11,493
13	의정부지방법원	401	4,343	436	4,629	9,809
14	청주지방법원	345	3,934	339	3,837	8,455
15	창원지방법원(현재)	398	3,741	360	3,945	8,444
15	전주지방법원	289	4,362	286	3,062	7,999
16	제주지방법원	304	3,107	366	3,346	7,123
17	창원지방법원(김해지원 제외시)	219	2,054	198	2,166	4,637
18	춘천지방법원	172	1,218	167	1,555	3,112

다. 검토의견

- 개정안은 창원지방법원 관내에 설치된 김해시법원을 폐지하고, 창원지방법원 관내와 2025년 3월 1일 설치 예정인 창원가정법원 관내에 각각 김해지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는 ① 김해지원의 관할인구 및 사건 수 규모의 적정성, ② 김해시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현황과 개선의 정도, ③ 창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인구와 사건 수에 미치는 영향, ④ 법원 신설에 따라 수반되는 재정 부담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이 설치되면, 김해시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신설 창원지원의 관할인구 및 사건 수 규모는 42개 지원 중에서 각각 15위 및 16위 수준으로 적당한 수준으로 보임.
- 다만, 김해지원이 신설되면, 창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인구 및 사건 수 규모가 18개 지방법원 중 각각 17위로 낮아지게 되는 점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개정안은 부칙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현재 창원지방법원 본원 및 창원가정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경과조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현재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의 경과조치는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2029년 3월 1일의 전날은 2029년 2월 28일인데, 이를 2029년 2월 29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992억 3,400만원(연평균 198억 4,700만원)으로 추정됨. 이에는 「검찰청법」 제3조제1항²⁾에 따라 김해지원에 대응하여 설치하는 김해지청 신설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참고자료. 비용추계 결과 참조).

2) 「검찰청법」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라. 관계기관 의견

- 법원행정처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을 신설하는 경우 김해시 주민들의 사법접근성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나, 김해시와 창원시는 인접한 도시로서, 타 시·군 대비 현재 사법접근성이 나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마산지원 신설(2011. 3. 2.) 이후 다시 김해지원이 신설되는 경우 창원지방법원 본원의 규모가 약 45% 축소되어 창원지방법원이 지방법원 본원으로서의 규모와 위상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71

참고자료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및 창원가정법원 소속 김해지원을 신설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65억 3,200만원, 2031년 31억 3,8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992억 3,400만원(연평균 198억 4,700만원)으로 추계

[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창원지방법원 및 창원가정법원 소속 김해지원 신설 (안 [별표1], [별표3], [별표5] 및 [별표7])	46,532	43,782	2,702	3,080	3,138	99,234	19,847

- 주: 1. 창원지방법원 및 창원가정법원 소속 김해지원 신설(안 [별표1], [별표3], [별표5] 및 [별표7])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이고 김해지원이 신설되면 「검찰청법」 제3조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지청을 둘 수 있으므로 김해지청도 같이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현행 지원과 지청 현황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2029년 3월 1일부터 김해지원을 운영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 동안 김해지원과 김해지청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라 김해지원이 신설되면, 「검찰청법」 제3조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지청을 둘 수 있으므로 김해지청도 같이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김해지원 및 김해지청의 청사 신축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공사비, 부대경비, 35명의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 김해지원과 김해지청이 설치되는 경우 판사와 검사가 증원될 수 있으나, 판·검사의 증원여부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과 「검사정원법」 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신축 면적 산정과 증원 대상에서 제외
- 개정안 부칙에서 202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사 신축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